

# 심사보고서

2002년도서산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 
심 사 보 고 서

2002. 8. 2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. 7. 26
- 나. 제출자 : 성두현의원의 7인
- 다. 회부일자 : 2002. 7. 26
- 라. 상정일자 : 2002. 8. 2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 : 박상무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금년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로써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에 집회할 수 없어 지난 제 73회 임시회시 2002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·10월중으로 변경 집회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는 바,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9월 10일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제1차 정례회 집회일 : 당초 “9월·10월중”으로 된 집회일을  
⇒ “9월 10일”로 결정

3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4. 토론 및 소수의견 : 없었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1 호
의 결 년 월 일	2002. . . (제 회)

## 2002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

발 의 자	성두현 의원 외 7 인
발의년월일	2002. 7. 23.

# 2002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

의안 번호	1
----------	---

발의년월일 : 2002. 7. 23.

발 의 자 : 성두현의원 외 7인

## 1. 주 문

금년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로써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에 집회할 수 없어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2002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·10월중으로 변경 집회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는 바,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9월 10일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- 제1차 정례회 집회일 : 당초 “9월·10월중”으로 된 집회일을  
⇒ “9월 10일”로 결정

## 3. 관련근거

가. 지방자치법 제38조(정례회)

나.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(집회) 제1호

「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」